

◎ 연차별 등록료

* 납부등록료 = 기본료 + (가산료×청구항 수)

권리구분		설정등록료 (1~3년차)	연차등록료				
			4~6년차	7~9년차	10~12년차	13~15년차	16~20년차
특허	기본료	15,000원씩 45,000원/년	40,000원/년	100,000원/년	240,000원/년	매년 360,000원	
	가산료청구범위 1항마다	13,000원씩 39,000원/년	22,000원/년	38,000원/년	55,000원/년	매년 55,000원	
실용신안	기본료	12,000원씩 36,000원/년	25,000원/년	60,000원/년	160,000원/년	240,000원/년	
	가산료청구범위 1항마다	4,000원씩 12,000원/년	9,000원/년	14,000원/년	20,000원/년	20,000원/년	
디자인	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35,000원/년	70,000원/년	140,000원/년	210,000원/년	
	일부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34,000원/년	(4~20년차)	

◎ 연차등록료 납부방법 안내

납부유형	납부방법 및 절차
은행납부	본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의 수납의뢰서(앞면 아래)를 납부등록료와 함께 가까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
무통장 입금	CD기 / ATM기 및 온라인을 통해 입금전용계좌(앞면 맨 아래에 기재)로 송금
온라인납부	1. 특허로 홈페이지 (http://www.patent.go.kr)에 접속 2. 로그인 후 수수료관리>수수료납부에 접속하여 온라인납부 또는 인터넷지로 바로가기에서 납부
자동납부	1. 특허로 홈페이지 (http://www.patent.go.kr)에 접속 2. 로그인 후 수수료관리>수수료자동납부에 접속하여 자동납부 신청

* 2011년 4월 1일부터 4년차분 이후부터의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납부하는 경우에는 총액의 5%를 차감해 드립니다.

연차등록료 납부안내

본 안내서는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설정등록 4년차부터 권리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2018년 06월 11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추가납부기간에 납부하실 경우에는 납부 금액이 가산됩니다. 만일 2018년 12월 1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본 권리는 소멸됩니다.

연차등록료 납부방법은 은행납부, 무통장입금, 온라인납부 및 자동납부 중 선택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2016.7.29부터 추가로 7~9년차분 연차등록료에 대해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

특허 제 1042008호
제 8년분 2018.06.12. ~ 2019.06.11.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2030년 12월 23일
발명의 명칭 : 슬러지 처리용 약품 혼합시스템

납부기한 및 납부등록료

2018.06.11.까지 404,000원

연차등록료 수납의뢰서 (수납은행용)

세입징수관서	특허청
계좌번호	127996-6
납부자번호	0131-2-5-2018-0168226-03
권리번호	10-1042008-00-00
특허(등록)료	404,000원
납부기한	2018.06.11.

위와 같이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권리자보관용 영수증

납부자명	서울특별시
납부자번호	0131-2-5-2018-0168226-03
납부년차	제 8년차분(2018.06.12. ~ 2019.06.11.)
권리번호	10-1042008-00-00
특허(등록)료	404,000원
납부기한	2018.06.11.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수납인과 현금자금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본 연차등록료는 고객님의 입금전용계좌를 통해 CD기/ATM기 또는 온라인으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전용계좌 : 농협은행 790-0397-5688-506 (위 고지 금액에 한하여 입금 가능하며, 타행 이체 시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